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규제를 개선하여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동전화 등 휴대용 무선국에만 적용되던 무선국 허가제도를 확대하고,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며, 주파수 할당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검사방식을 표본검사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전파사용료 연납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음5G 단말기 신속 활용 (안 제21조제1호)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 등에 장착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제도 적용

나. 위성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확대 (안 제36조제1항제2의2호)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다.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규제 완화 (안 제42조의2제2항)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안 제90조제1항)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를 2023년까지 1년 연장

마.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 개선 (안 제91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23조의3제3의4호·제7호)

별도의 신청없이 전파사용료 연납이 즉시 가능하도록 연납 제도를 개선하고, 전파사용료 고지방법 확대 등 부과·징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

바. 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합리화 (안 제96조제2항·제3항·제4항, 제101조제2항·제4항)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치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이용하는 휴대용”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방송국: 5년(위성방송국과 위성방송보조국은 7년으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최초로 준공검사”를 “준공검사”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91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설자에게 1년 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납부금액으로 하는 전파사용료 납부고지(이하 ‘연납고지’라 한다.)를 하고 시설자가 연납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전파사용

료 일시납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9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파 차단이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하는 제74조의 설비는 검사를 실시하는 단위 건물(건축물)의 허가 주파수마다 적용한다.

제96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허가 주파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제10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로서 제96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40퍼센트를 감경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중입출력송수신설비를 사용한 각각의 무선국에 대하여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로 검사하는 송수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수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2.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 주파수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로 검사하는 주

파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에 대한 검사수수료

제123조의3에 제3호의4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7. 제118조 및 제124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u>이용하는 휴대용</u> 무선국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 ----- ----- -----. 1. ----- ----- ---- <u>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u> ----- --
2. (생략)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u>2의2. 방송국: 5년</u>	2. (현행과 같음)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 ----- -----. 1.·2. (현행과 같음) <u>2의2. 방송국: 5년(위성방송국과 위성방송보조국은 7년으로 한다.)</u>
3. (생략) ② ~ ⑤ (생략) 제42조의2(표본검사) ① (생략)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표본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신 설>	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설자에게 1년 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납부금액으로 하는 전파사용료 납부고지(이하 ‘연납고지’라 한다.)를 하고 시설자가 연납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③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허가 주파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생략) <신 설>	⑥ (현행과 같음)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파 차단이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하는 제74조의 설비는 검사를 실시하는 단위 건물(건축물)의 허가 주파수마다 적용한다.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중입출력송수신설비를 사용한 각각의 무선국에 대하여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로 검사하는 송수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수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제96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40퍼센트를 감경한다.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로서 제96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40퍼센트를 감경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중입출력송수신설비를 사용한 각각의 무선국에 대하여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로 검사하는 송수신장치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 (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를 제외한 나머지 송수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2.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 주파수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로 검사하는 주파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에 대한 검사수수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 기간통신사업자 6. 방송사업자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	---	--	---	--

1. ~ 3의3. (생략) <u><신설></u>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부과·징수에 관 한 사무
4. ~ 6. (생략) <u><신설></u>	4. ~ 6. (현행과 같음) 7. 제118조 및 제124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 수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연락처	(044) 202 - 4923